

규 약 정 정 내 용

1. 정정대상 집합투자기구 : 대신 비타민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(H)[주식]
2. 정정사항: 신탁업자변경
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제1조 (신탁계약의 목적)	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,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대신자산운용(주)와 신탁업자인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,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,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대신자산운용(주)와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,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부 칙	<< 신 설 >>	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